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81
------------	------

발의연월일 : 2017. 3. 20.

발의자 : 어기구 · 박정 · 김병욱  
황주홍 · 박재호 · 김경진  
신창현 · 홍의락 · 조배숙  
정성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그러나 그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석유자원의 가격이 하락하여 한국석유공사는 2016년 결산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는 등 급격히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현재 공사는 이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공사의 핵심자산 등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자산의 헐값 매각,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일정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① 공사는 사업을 추진 또는 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자산의 매매·교환·양도 및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매각 등 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③ 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公正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① 공사는 사업을 추진 또는 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의 의결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p> <p>2. 자산의 매매·교환·양도 및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매각 등의 규모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p> <p>③ 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p>

자산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